

충청북도지역홍보대책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281
----------	-----

제출년월일 : 1993.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 제안사유

1984. 6. 29 제정 공포 시행중인 본조례는 필요 안건이 많지 않아 운영실적이 저조할 뿐만 아니라 도정 조정위원회에 통합운영함이 보다 효율적이며 필요시 관계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여 의견청취가 가능하므로 폐지하고자 합니다.

□ 주요골자

충청북도지역홍보대책협의회조례 폐지

□ 제안근거

내무부의 지방단위 각종위원회 정비 지침

□ 기타 참고자료

- 내무부 지방단위 각종위원회 정비계획 지침
- 충청북도지역홍보대책협의회조례

충청북도지역홍보대책협의회조례 폐지조례(안)

충청북도지역홍보대책협의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참고자료

- 내무부 지방단위 각종위원회 정비계획 지침
- 충청북도 지역통보대책협의회 조례

"정직·성실하게 봉사한다."

내

부

부

우 110-760 / 종로구 세종로 77 종합청사 1311호 / 전화 731-2320 (형) 2320 / 전송 733-2755

문서번호 지기 12209-406

시행일자 1993.08.02. ()

경유

수신 수신처참조

참조

선 결	기 회 당당관	7/3 7/2	지 시
점 일 자 시각	1993. 8. 3	/	결
수 번 호	147	재	
처 리 과		공	
담 당 자		람	

제목 지방단위 각종위원회 정비계획 시달

1. 지기 12209-181('93.4.9)호 및 지기 12209-312('93.6.16)호와 관련임

2.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에 과다하게 설치·운영중인 각종 위원회를 행정

체신차원에서 전면 검토하여 시도 및 관계부처통과의 협의를 거친 "지방단위 각종 위원회 정비계획"을 별첨과 같이 시달하니, 위원회 정비에 따른 관계 자치법규의 개정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향후 규칙·분령·행정지시통에 의한 위원회 설치는 지양하되,

* 법령개정전이라도 통·폐합 대상위원회의 운영은 유보

3. 계속 존치하는 위원회에 대하여는 각종 활성화 방안을 조속히 이행하여 내실있는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기 바라며

4. '93.8-11월(4개월간)까지 그 정비실적을 매월 다음달 10일까지 보고 하기 바람.

첨 부 : 지방단위 각종위원회 정비계획 1부. 끝.

내부부부장관

수신처 : 나 01-06, 10-18

地方單位各種委員會整備計劃

內務部

나. 대부분行政內部公務員으로構成되어「市道.市都區政調整委員會」로統合運營
함이 效率的인 委員會(24種)

위원회명	설치근거 및 소관부처	통합사유	비고
시도 : 12종			
·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공무국외여행규정 제4조(총무처)	위원회성이 대부분 실국장으로 되어 있고, 운영실적이 저조하여 조정위원회에 통합 운영함이 효율적임	
· 행정전산화 추진위원회	지역전산본부설치 운영조례(시도)	(필요시 관계전문가를 위원으로 으로 위촉하여 의견청취 가능)	
· 지도방문조정 통제심의 위원회	지도방문조정심의 위원회규정 (내무부)		
· 지역홍보대책 협의회	지역홍보대책협의 회조례(시도)		
· 시도보편집 위원회	시도보발행조례 (시도)		
· 근로청소년 장학위원회	근로청소년장학금 지급조례(시도)		
· 불우이웃돕기 심의위원회	이웃돕기금고설치 및 운용조례 (시도)		

●충청북도지역홍보대책협의회조례〔^{1984. 6. 29}
조례 제1376호〕

개정 1987. 4. 3 조례 제1536호	개정 1990. 10. 12 조례 제1815호
1988. 2. 5 조례 제1588호	1991. 4. 6 조례 제1906호
1989. 3. 3 조례 제1695호	1992. 3. 27 조례 제1980호
1989. 6. 30 조례 제1719호	

제1조 (목적) 지역특성에 적합한 대민홍보 방안의 개발 조정시행으로 도정시책과 대민봉사행정을 보다 효율성있게 추진하여 나아가기 위하여 충청북도 지역홍보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

1. 지역홍보 종합대책 협의 수립
2. 시기별 역점 홍보사항의 추진방향 협의
3. 유관기관, 단체 상호간의 홍보 협조
4. 홍보활동의 평가분석
5. 기타 홍보활동에 관한 문제점 협의 및 개선대책 수립

제3조 (구성) ①협의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과 위원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공보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에 준하는 자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언론기관
2. 지방방송국의 보도국장
3. 도 및 교육위원회의 국, 과장
4. 도 홍보위원
5. 지방단위 유관기관장, 직능단체 대표
6. 기타 대민홍보에 관한 조례가 깊은 인사

제4조 (위원장의 직무등) ①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의) ①위원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협의회의 회의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하며 정례회의는 분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 개최한다.

③ 위원이 임시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협의 안건을 미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제6조 (간사등) ① 협의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홍보기획개장이 된다.

제7조 (수당)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상임위원의 위촉) ① 도에 도지사가 위촉하는 1인의 상임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상임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위촉한다.

1. 지방행정에 식견이 높고 활동력이 있는 자
2. 다년간 대민 홍보 업무와 관련된 경력소지자로서 홍보기법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자

제9조 (상임위원의 대우) 상임위원에게는 월 531,000원의 월액수당과 월액수당의 400%에 해당하는 기밀수당 및 월액수당의 100%에 해당하는 정근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92. 3. 27)

제10조 (상임위원의 기능) ① 상임위원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민 홍보기법 개발 연구
2. 유관기관의 대민 홍보활동 지원
3. 지역단위 홍보성과 분석
4. 기타 도지사가 부여하는 사항

② 상임위원은 협의회의 정례회의와 임시회의에 출석 발언할 수 있다.

제11조 (연구보고) 상임위원은 대민홍보 기법 개발 연구와 활동상황을 분기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상임위원의 임기) 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 (운영세칙) 협의회의 운영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7. 4. 3 조례 제1536호)

이 조례는 1987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88. 2. 5 조례 제1588호)

이 조례는 198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89. 3. 3 조례 제1695호)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89. 6. 30 조례 제1719호)

이 조례는 198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0. 10. 12 조례 제18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1. 4. 6 조례 제19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2. 3. 27 조례 제1980호)

이 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